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16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서영교·김승원·김민철

장경태 · 임호선 · 이규민

안민석 · 오영환 · 황운하

신정훈 · 이수진 · 이해식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8. 6. 8 현행법 개정으로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은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남게되어 결과적으로 하천관리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음.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하여업무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자원과 하천의 분절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측

면에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전·이용 및 개발"을 "보전·이용·개발,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해안·하천"을 "해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 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	화경부장과
제1항에 규정된 사무	20101

-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 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같은 조 제4항 전단·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22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6조, 제88조제3항, 제92조제2항·제3항·제3항·제3항제6의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5항·제8항·제9항, 제39조제2항, 제45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

부장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 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하천 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를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③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 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을 제9조제 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 제5호"로 한다.

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 중 "제외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 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 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제39조(환경부) ①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	
경오염방지, 수자원의 <u>보전ㆍ이</u>	<u>보전·이</u>
<u>용 및 개발</u> 에 관한 사무를 관장	용ㆍ개발, 하천의 지정ㆍ관리ㆍ
한다.	<u>사용 및 보전</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	제42조(국토교통부) ①
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	
설, <u>해안·하천</u> 및 간척, 육운·	해안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